

第95回서울特別市議會(臨時會)

#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

第 5 號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

日 時：1997年6月13日(金) 午後2時

場 所：財務經濟委員會會議室

### 議事日程

1.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2. 財務局所管業務報告의件

### 審査된案件

1.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.....1面
2. 財務局所管業務報告의件.....9面

(14時 39分 開議)

○委員長 黃仁明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臨時會 제5차 財務經濟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.  
 (議事棒 3打)

1.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

○委員長 黃仁明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.  
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.  
 (議事棒 3打)

먼저 서울特別市長을 대리하여 財務局長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財務局長 金太壽 財務局長 金太壽입니다.

### (報告)

의안번호 제809호 「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, '81년 4월 30일 이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영세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며,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완화

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주요골자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, 첫째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연리 8%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,

두번째, '81.4.30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"50/1,000에서 25/1,000"로 인하해서 영세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고,

세번째, 시외의 지역 군단위 지역이 되겠습니다. 군단위 지역의 주거용 점유재산에 대한 토지면적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"400㎡이하"에서 "700㎡이하"로 완화해서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,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.....  
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黃仁明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.

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.  
 .....

### (參 照)

### V. 검토의견

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재정법